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통일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1.4.20. 일부개정, 10.21. 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3, 제5조, 제6조 관련,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협의회 명칭을 일괄 변경(안 제2조, 안 제49조의2)

나. 법 제12조 관련,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 교부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다. 법 제16조, 제17조제6항 관련,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조·협약하도록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상향 입법된 기존 시행령 조문을 삭제·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5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①보호대상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의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직업훈련의 실시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협회의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u>대책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협회의의 구성) ----- ----- <u>보호</u> <u>및 정착지원협의회</u> ----- ----- -----. 1. 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①보호대상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신청과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의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직업훈련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	제32조(직업훈련의 실시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

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직업지도)”를 “(직업훈련상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및 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시”를 “실시 및 직업훈련수당의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제33조에 따른 직업훈련상담 등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였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이에 협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5조(취업 알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③ (생략)

<삭 제>

제33조(직업훈련상담 등) ① -----
-- 보호대상자등-----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취업 알선)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및 법 제22조-----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 -----.
1. 제32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1. ----- ----- 실시 및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2. 제33조에 따른 직업훈련상당 등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삭 제>
4. (생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① ----- -----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협의회-----
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정착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5923